

## 지방세법령 질의·회신

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

### 1. 토지수용에 따른 대체취득시 취득세 등 비과세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

#### 【질 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도로확장공사 시행으로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 수용되어 보상금을 받아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물 사용(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 회 신

가.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27조제2항에서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하여登記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수용(협의매수)되어 보상금을 모두 수령한 경우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나 대체취득 하는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건물의 사용(준공)검사일이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부터 1년이 초과된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 2. 부동산 매매 계약 해제시 취득세 납부 여부에 대한 질의

### 【질 의】

주택에 대하여 부동산 매매계약 계약에 대한 취득 신고를 한 후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매매 계약 해제(실거래 신고 취하) 사실을 입증한 경우 취득세 납부 여부

### 회 신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개인간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 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하면서, 그 단서에서 취득후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고

나. 이러한 단서의 취지가 개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게 되는 불합리함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는 점과 개인간 거래에 있어서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과 그러하지 아니한 취득을 구분하여야 할 실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다. 귀 문과 같이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2006. 7.24일자로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취득일부터 30일) 내인 2006.8. 16일자로 주택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실거래 신고를 취하(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확인서 교부)한 경우까지 취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하겠으므로(행정자치부 지방세심사청구 2006-333, 2006.7.31 참조),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 3. 대도시내 법인분할에 따른 등록세 종과세 여부

### 【질 의】

1961년 대도시내에서 설립된 농협중앙회가 2001.7.1 같은 대도시내에서 설립된지 5년 이상된 축협중앙회 등을 특별법에 의거 흡수합병 한 후 운영하다가 2001.9.1 사료부분 자회사를 설립하여 법인분할한 경우 등록세 종과세 해당여부

회신

가.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등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100분의 300으로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시행령 제102조제6항에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대도시내의 내국법인이 분할(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로 인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대도시내에서 설립된지 5년이 경과된 농협중앙회가 같은 대도시내에서 설립된지 5년이 경과된 축협중앙회 등을 2001.7.1 흡수합병 하여 운영하다가 2001.9.1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내지제3호에서 규정한 분할요건에 맞게 법인을 분할하여 대도시내에서 법인(자회사)을 설립하는 경우라면 그 분할에 따른 등기(법인등기 및 부동산 등기)는 상기 규정에 의한 등록세의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4. 분할신설법인이 재분할시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 추징여부 등에 대한 질의

【질 의】

법인의 분할에 따라 신설된 법인이 다시 재분할 하는 경우 기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여부 및 재분할 하여 신설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신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 및 제120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등록 및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고 한 후 제119조제1항제10호 및 제120조제1항제9호에서 “법인세법 제46조제1항각호(물적분할의 경우에는 동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및 이에 관한 등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분할 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분할하면서 신설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재산과 이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은 후 분할 신설된 법인이 5년 이내에 다시 재분할 하는 경우에는 종전 법인의 분할에 따라 기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대상은 되지 않으나 재분할 하여 신설되는 법인이 취득하는 재산과 이에 관한 등기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 5. 법인분할에 의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

### 【질 의】

법인분할에 따라 신설되는 법인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 해당여부

### 회 신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 및 제120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한 다음, 제119조제1항제10호 및 제120조제1항제9호에서 법인세법 제46조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및 이에 관한 등기라고 규정하고 있고,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제6항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10호 및 제120조제1항제9호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은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10호 및 제120조제1항제9호 규정에 의한 법인분할에 해당된다면 당해 법인분할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것이고,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제6항 규정에 의거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6.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 1가구1주택 해당 여부

### 【질 의】

공동주택임대사업자로부터 4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던 중 임대주택사업자의 부도로 공매 또는 경매되는 당해 공동주택을 임차인이 취득하여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신

가. 전라북도도세감면조례 제12조제2항 및 그 제1호에서 분양(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유기기간 경과 후 분양하는 경우와 임대주택사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공매 또는 경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하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임대하여 거주하고 있던 중 임대주택사업자의 부도로 거주하고 있던 주택을 임차인이 공매나 경매로 취득하여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된다 할 것이나, 임대주택의 임차자가 아닌 자가 공매나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의한 면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7. 자산관리회사가 과점주주된 경우 취득세 납부 여부에 대한 질의

【질 의】

2개의 상호 독립적인 펀드를 관리하는 자산관리회사가 투자목적으로 특정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자산관리회사의 과점주주 취득세 납부 여부

회신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제1항에서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 귀 문과 같이 상호 독립적인 펀드를 관리하는 자산관리회사라 하더라도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51%이상 취득하여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산관리회사는 당해 소유 지분에 대하여 과점주주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8. 수상 레저 기구에 대한 지방세 질의

### 【질 의】

수상레저안전법상 등록대상인 수상레저기구(수상오토바이, 20마력이상 모터보트, 30마력이상 고무보트)에 대하여 지방세 부과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 회 신

가.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 등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시·도에서 그 취득자에 기 부과하도록 하고 같은법 제125조제2호에서 선박등기 및 「선박법」 제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등록을 등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 문과 같이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에 의하여 수상레저기구를 등록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선박법」 제26조의2제1항 규정에 의한 선박의 등록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등록세는 부과되지 아니하나,

다.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 의하여 「선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하여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9. 1가구1주택자 취득세와 등록세 추징에 대한 질의

### 【질 의】

주택을 여러 상속인과 공동으로 상속받은 후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1가구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가. 지방세법 제79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제84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고 같은조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주택을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

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 대전광역시시세감면조례 제12조제2항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전용면적 40제곱미터초과 60제곱미터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주택을 여러 상속인과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보므로 귀 문과 같이 지분율이 여러 상속인중 가장 작은 330분의 10인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 1가구 1주택자에 해당되어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 10. 비영리법인에 대한 주민세 세율적용 관련 질의

### 【질 의】

주민세 법인균등할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비영리법인으로서 출자금 또는 자본금을 갖고 있지 않고 출연금을 기본재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출연금을 출자금 또는 자본금으로 간주하여 그 출연금을 기준으로 법인균등할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가. 지방세법 제176조 제1항 제2호에서 법인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및 종업원 수에 따라 법인균등할 주민세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비영리법인의 출연금은 영리활동과 무관하게 그 법인의 비영리 고요목적사업의 수행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원본으로서의 개념을 갖고 있어 이를 자본금이나 출자금과 동일시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법제처 법령해석지원팀-949, 2006. 6. 12. 해석 참조)

나. 귀문의 경우,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출연금은 자본금이나 출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자본금이나 출자금이 없는 기타법인에 해당하는 세율(W50,000원)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11. 법인장부의 범위에 대한 질의

### 【질 의】

「입금표」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취득가격을 입증하는 법인장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가.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제2호에서 법인장부는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 결산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입금표는 거래하는 쌍방이 대금지급의 확인을 위해서 쓰여지는 영수증일뿐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법인장부 또는 사실상 취득가격을 알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다. 귀 문과 같이 신고가액(매매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 단서에 의거 시가표준액이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됩니다.

## 12. 개별주택 증축분 과세표준액 산정에 관한 질의

### 【질 의】

건축물(개별주택)의 증축 및 개수시 과세표준액 산정을 주택가격비준표와 건물시가표준액 중 어느 것을 활용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 신

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호에서 토지와 주택에 대하여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사용하되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항 제2호에서는 제1호외의 건축물과 선박 등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한 경우에는 그로 인해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이 경우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종합해 보면

나. 개별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방법은 지방세법(제111조 제2항 제1호)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실이 없으므로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고려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규정의 “건축물”은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을 부연 설명하고 있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1조(증축 등의 과세표준액) 규정은 주택이외의 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액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 이에 개별주택의 증축 및 개수에 따른 시가표준액 산정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제1호 단서 규정에 의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귀문의 경우 “갑설”)하다고 사료됩니다.

### 13. 산업단지내 공장용지 취득시기에 대한 질의

#### 【질 의】

법인이 광주광역시가 조성하여 분양하는 산업단지내의 공장용지를 취득하기로 계약한 후 잔금 100만원을 남겨놓고 있다가 2004.9.30 완납한 경우 공장용지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회 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과 그 제1호에서 법 제111조제5항각호의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시에서 조성하여 분양하는 산업단지내의 공장용 토지를 제3자가 취득하기로 계약한 후 취득금액 대부분을 납부하였으나 100만원을 미납하고 있던 중 2004.9.30 완납하였다면 사실상 잔금지급일인 100만원을 납부한 날(2004.9.30)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14. 권리 변동이 없는 단순신고업무에 대한 면허부과 여부 질의

##### 【질 의】

권리의 변동이 없고 새로운 권리가 설정되지 아니하는 단순한 상호 변경 등도 면허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와 면허의 변경 신고수리기관이 변경신고 수리전에 그 사실을 관할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 신

가. 지방세법 제160조제1항에서 “면허”라 함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를 말한다고 하고 제161조제1항에서 “각종의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 귀 문과 같이 귀 회가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58조제3항에 의거 시·도지사로부터 정보통신공사업자의 면허 변경 신고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경우에는 행정관청을 대리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므로 귀 회가 정보통신사업자의 상호, 영업소재지, 대표자, 자본금, 정보통신기술자 등에 대한 변경 신고를 수리할 때 마다 정보통신공사업자는 수시분 면허세를 납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 지방세법시행령 제129조제1항에서 면허부여기관이 면허를 부여·변경 또는 취소하였을 때에는 면허증서를 교부 또는 송달하기 전에 그 사실을 관할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라. 귀 문과 같이 면허의 변경신고 수리와 면허증서의 교부 또는 송달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라도 면허 부여 및 변경 사항을 관할 시장·군수에게 통보한 후 면허증서를 교부 또는 송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15. 증여자에게 소유권 환원시 취득세 부과 여부에 대한 질의

##### 【질 의】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수증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 후 증여자와 수증자간의 합의에 의한 증여계약 취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원래의 소유자인 증여자에게 소유권이 환

원된 경우 원래의 소유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

회신

가. 대법원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었던 양도계약을 소급적으로 실효시키는 합의해제약정에 기초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원상회복조치의 결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 소정의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시(93누11319,1993.9.14)하고 있으므로

나. 귀 문과 같이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증여계약 합의해제로 인해 원래의 소유자인 증여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라면 소유권을 회복하는 증여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6. 법인균등할 주민세 관련 질의

【질 의】

- 1) ○○광역시로부터 ○○광역시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함)가 노상 주차장 관리·운영을 위탁 받아 현장에 1~2평 정도의 컨테이너 부스(책상 1개만 있고, 화장실, 전화기 등 없음)를 설치하고 공사의 직원 1명이 근무시간내 상주 근무하면서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컨테이너 부스를 물적 설비로 보아 법인균등할 주민세를 과세할 수 있는 지 여부
- 2) 공사에서 영구 임대아파트를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아파트별로 관리소장 1명을 채용·파견하여 관리소장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아파트 관리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법인균등할 납세의무자를 공사와 관리소장중 누구로 보아야 하는 지 여부
- 3) 광주광역시와 공사간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서 광주광역시 소유 시설물에 대한 관리·운영을 공사에 위탁하면서 위탁시설 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위탁자가 부담하는 경우 법인균등할 주민세 납세의무자를 누구로 보아야 하는 지 여부
- 4) 건설공사 도급사업장에 대한 법인균등할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여부

회신

지방세법 제172조 제6호에서 법인균등할 과세대상 “사무소 또는 사업소”라 함은 인적 및 물적 설비

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물적 설비’라 함은 허가와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축물, 기계장비 등이 있고 이러한 설비들이 지상에 고착되어 현실적으로 사무·사업에 이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1) 사업장내 시설물이 물적 설비로서 외형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당해 시설물을 법인균등할 과세대상 물적 설비로 볼 수 있는 지에 대한 판단은 시설물의 주된 용도, 사업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물적 설비가 실질적으로 당해 사업에 직접 공여되고 있다면 사업소세 과세대상 물적 설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귀문 시설물(컨테이너 부스)이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처분청에서 사실조사 후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2) 임대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을 공사에서 채용하고 연봉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면 관리소장은 공사의 종업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관리사무소는 공사의 사업소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관리사무소에 대한 법인균등할 주민세 납세의무는 공사에 있다고 사료됩니다.

3) 위탁사업장에 대하여 법인균등할 납세의무를 누구에게 지울 수 있는 지에 대한 판단은 사업장 물적 설비에 대한 소유권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사업의 일체에 대하여 누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탁사업장(영락공원, 어린이 공원, 골재채취장)에 근무하는 인적 설비(종업원)가 공사에게 귀속되어 있고, 위수탁계약서상 위탁시설 관리·운영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이 공사에게 부여되는 등 사실상 위탁사업장에 대한 인적 및 물적 설비에 대한 관리·운영 책임이 공사에게 주어진 경우라면 당해 사업소는 공사의 사업소에 해당하여 법인균등할 주민세 납세의무는 공사에게 있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처분청에서 사실조사후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4) 건설공사 도급사업장(OO 2지구 택지개발건설현장)에 대한 주민세 납세의무는 수임자(건설회사)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도급자인 공사에게는 법인균등할 주민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 17. 대도시외 영농조합법인 대도시내 이전시 등록세 납부 관련 질의

### 【질 의】

대도시외 지역에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 대도시내로 법인을 이전하는 경우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가 얼마인지 여부

회신

가.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2호에서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에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100분의300으로 증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37조제1항제4호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은 매건당 75,000원의 등록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대도시외에서 설립한 영농법인이 대도시내로 법인을 이전하는 경우라면 법인의 이전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인 75,000원의 3배에 해당하는 세액(225,000원)을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18. 주민세 환급지에 대한 질의

【질 의】

근로소득만 있는 “갑”이 2004년 연도중에 A시에서 B시로 근무지를 이동함에 따라 2004년 귀속분 근로소득을 B시에서 연말정산하여 환급 받은 후, “갑”이 2006년에 A시로 주소를 이전한 후 근로소득 경정청구를 하여 종합소득세로 추가 환급결정을 받은 경우 추가 환급에 따른 정당한 주민세 환급지

회신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30조의6 제2항에서 근로자가 연도중 근무지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소득세 연말정산으로 환부 또는 추정하는 경우에 연말정산일 현재의 근무지를 주민세 납세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소득 경정청구제도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환급 받는 경우는 연말정산으로 인한 환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며, 귀속 연도내에 근무지 이동이 있었던 경우에는 법문에 따라 환급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 바

나. 지방세법 제177조의4 제4항에서 세무서장이 신고를 받거나 부과지한 소득세할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하고, 이 경우 시장·군수는 당해 소득세할을 환부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 A시에 소득세 환급내역을 통보하였다면, 그 소득세 환급내역을 통보 받은 A시(귀문의 경우 ‘갑설’)에서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19. 종교단체가 증여받은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 비과세 여부

### 【질 의】

선교사의 파송, 관리 및 훈련과 선교사 정보의 수집 및 교환 등을 목적으로 2006.8.16 설립된 종교법인이 제3자로부터 증여받은 공동주택을 주로 외국선교사의 한국방문시 숙소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 회 신

가.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및 제127조제1항제1호와 동법시행령 제79조제1항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취득 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 함은 정기적인 예배, 찬양집회, 기도와 신앙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집회장소나 종교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 외에 제3자로부터 증여받은 공동주택을 주로 외국선교사 한국방문시 숙소제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이는 종교용에 직접 사용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 20. 시설대여중인 리스물건의 취득세 납세지 질의

### 【질 의】

등기·등록의 대상이 아닌 기중기(타워크레인 등)를 시설대여하는 경우 취득세 납세지에 대하여

### 회 신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74조제2항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차량, 기계장비 등을 시설대여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 또는 등록명의로 불구하고 시설대여업자를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는 자기 계산과 위험부담아래 리스물건을 독립적으로 이용하고 있고 시설대여업자는 리스물건을 대여하는 형태이므로 귀 문과 같이 등기·등록 대상이 아닌 타워크레인의 취득세 납세지는 당해 리스물건을 주로 관리하는 시설 이용자의 주소지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21. 과점주주의 특수관계인과 관련하여 정부의 범위에 대한 질의

### 【질 의】

정부가 지분의 100%를 소유중인 법인 甲이 100% 출자하여 법인 乙을 설립한 경우 법인 乙이 지방세법제6조제1항제12호에서 규정한 정부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제1항제12호의 특수관계인의 범위에서 정부가 주주(정부출자법인)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지방세법에서 정부출자법인의 범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동 규정에서 정부출자법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자금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다. 귀 문에서 정리금융공사가 예금보험공사(정부 100% 출자법인)의 자회사로서 정부의 재출자 법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제1항제12호에서 규정한 정부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